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판 결

사 건 2017나203333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C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571488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피고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1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5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5. 29. 접수 제117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14.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 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 300,000,000원(그 후 2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0. 4. 13.(그 후 2016. 4. 8.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4. 1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제1심 공동피고 B는 A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①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보증 건의 보증료율의 연 5/1,000의 비율을 더한 율에 의하여 위약금을 정하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과 B는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며, ③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A 등에게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제7, 8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그 이행일부터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A은 2016. 4. 8.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한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26. 신한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273,596,5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1) B는 1986. 3. 18.부터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피고는 2015. 2. 4.

B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200039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5. 3. 30.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목록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E SM7 승용차 지분 1/2 중 49/100 지분 및 일성콘도의 회원권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4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마하기술(이하 '마하기술'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실채무액 50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며, A과 마하기술의 주식 및 국민연금은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B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4. 12. 17.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분할 전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며, 2015. 4. 27. 면적 변경, 2015. 7. 8. 등록전환, 2015. 8. 18. 분할을 거쳐 I 임야 901㎡가 되었다)을 1,2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F 등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4. 12. 30.에, 잔금 630,000,000원은 2015. 4. 10.에 각 지급받고,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10.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F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채권자 마하기술, 청구금액

313,200,00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재산분할약정의 취소를 구한다.

2) 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 67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500,000,000원을 공제한 액수로서 1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경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인 마하기술의 신청에 따라 2015. 2. 6. B 소유의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것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8호의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기업은행,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 수원시 팔달구청 세무과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성남시 분당구청 세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 645,000,000원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 83,484,200원

(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 2,000,000원

(라)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채권 630,000,000원(계약금과 중도금의 경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에도 B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마)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면적증가분 342㎡에 상응한 추가매매대금 지급채권 145,000,000원(을다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와 F 등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위 부동산의 면적 증감시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중도금 지급 무렵 측량을 통해 위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위 매매계약서의 면적보다 342㎡ 증가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③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 실제로 F 등이 B에게 위 면적증가분에 따른 정산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B는 F 등에 대하여 145,000,000원 상당의 추가 매매대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E SM7 차량(이하 'SM7 차량'이라 한다) 1/2 지분의 가액 3,350,000원(= 6,700,000원 × 1/2)

(사) 피고는, B가 2016. 12. 16.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지급받을 월 140만 원 상당 국민연금 총액의 현가 370,000,000원, B의 A에 대한 116,833,327원의 미지급 급여채권 및 957,956,418원의 가수금채권도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B의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B의 A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한다거나 미지급급여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 및 회수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극재산

(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500,000,000원

(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2012. 2. 29.자 대출금채무(이하 '2012. 2. 29.자 대출금채무'라 한다) 17,622,000원

(다) 신한은행에 대한 2014. 4. 10.자 대출금채무(이하 '2014. 4. 10.자 대출금채무'라 한다) 26,322,000원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마) 마하기술에 대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 313,200,000원

(바)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23,580,620원(부동산등기부상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8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의 실채무액은 123,580,6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4부동산에 2014. 12. 31.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와 F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불이행시 지급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채무 없이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0원이라 할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은 소극재산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1,508,834,200원(= 645,000,000원 + 83,484,200원 + 2,000,000원 + 630,000,000원 + 145,000,000원 + 3,35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1,250,724,620원(= 500,000,000원 + 17,622,000원 + 26,322,000원 + 270,000,000원 + 313,200,000원 + 123,580,620원)으로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258,109,580원 가량 많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순 재산가액 233,767,2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645,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 83,484,2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 2,000,000원 + SM7 차량 49/100 지분 가액 3,283,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500,000,000원)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환

 판사 백승엽

판사

정준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 건물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아파트 제30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K 대 2930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제1304호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117.1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9305.9분의 67.527

2. 광주시 N 임야 10181㎡

3. (1동 건물의 표시)

경남 창원군 O, P, Q, R, S, T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9층 콘도미니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남 창원군 O 대 19627㎡

2. 경남 창원군 Q 임야 1703㎡

3. 경남 창원군 R 임야 3306㎡

4. 경남 창원군 S 임야 1415㎡

5. 경남 창원군 T 임야 1653㎡

6. 경남 창원군 P 광천지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22호 철근콘크리트조 36.96㎡ 지분 10분의 1

(대지권의 표시)

1, 2, 3, 4, 5, 6 소유권대지권 27707분의 69.09

4. 광주시 I 임야 2644㎡. 끝.